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스톱킹 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인바, 국민에 대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0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위성곤 · 이학영 · 윤준병
김기표 · 최혁진 · 임호선
정진욱 · 이개호 · 허영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톱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톱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법률 제 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① (생략)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u> 2. <u>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u> <u><삭제></u>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u>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u>	